

NAJU
*Web
Contents*

2021년 04월 16일 01시 11분

목차

목차	2
자금지원정책	3
01. 자금 지원정책	3
02. 교육지원 정책	3
03. 임시거주지 지원정책	3
04. 귀농귀촌 기타지원	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3
농업창업 지원사업(만65세 이하)	3
주택 구입·신축·증축·개축 지원사업	3
귀농 정착지원사업	4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4

나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및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하여 단계별 정보수집 및 학습, 기초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

귀촌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01. 자금 지원정책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2. 교육지원 정책

나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단계별 학습 및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임시거주지 지원 정책

나주시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교육한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4. 귀농귀촌 기타지원

이 외에도 나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용자)

- 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 지원자격 :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세대주,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농업창업 지원사업(만65세 이하)

- 지원금액 : 세대당 3억원이내
- 지원분야 :
 -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 농지구입,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 등
 -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용자조건 : 연리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주택 구입·신축·증축·개축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세대당 7천5백만원이내
- 지원분야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단독주택의 연면적150m2이하인 농가주택
- 용자조건 : 연리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귀농 정착지원사업

- 지원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후,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만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농업 경영 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세대주
- 지원금액 : 2천만원 이내(보조50%,자부담50%)
- 지원내용
 - › 경종분야(하우스 설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 › 축산분야(축사 시설개선 및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 신청시기 : 12월 말경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후,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만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농업 경영 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세대주
- 지원금액 : 5백만원 이내(보조80%,자담20%)
- 지원내용 : 주택수리 대보수(지붕, 기둥), 중보수 (오급수, 난방, 단열재), 경보수(도배, 장판)
- 신청시기 : 12월 말경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NAJU

Web Contents

